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2월 11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재 정 경 제 부 관
장 구 윤 철

●대통령령 제3608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6까지”를 “별표 8까지”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7]

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29,000톤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 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33,500톤
0804	50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	망고(mango)(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8,500톤

[별표 8]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 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3	냉동어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속], 삼치[스콤버 로모리스(<i>Scomberomorus</i>)속],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i>Caranx</i>)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дум(<i>Rachycentron canadum</i>)], 병어[팜푸스(<i>Pampus</i>)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데캡테러스(<i>Decapterus</i>)속], 열빙어[말로투스 벌로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			

		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 (<i>Euthynnus affinis</i>)], 벼니토[사르다(<i>Sarda</i>)속], 새치류, 둑새치, 청새치 [이 스티 오 포 리 대 (Istiophoridae)]. 다만,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 (<i>Scomber japonicus</i>)]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	25,000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 대해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페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냉동고등어에 대해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페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